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년 6월 7일
- 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9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제4차 행정위원회(2017. 6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이 「지방세기본법」(전부개정)과 「지방세징수법」(제정)으로 분법 시행(17.3.28.) 및 서울시 ‘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’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「지방세 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,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.
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5조)
- 「지방세징수법」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,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함.(안 제3조, 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본 안건은 「지방세기본법」 분법 시행(‘17.3.28.)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 및 서울시 ‘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’을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「지방세 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전부 제정조례안임.

- 주요 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.

-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
 - 관허사업의 제한(안 제3조),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(안 제4조)
- 기타 조례의 목적,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종합의견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 제정·시행(‘17.3.28.)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서, 구세에 있어서 운영상 실질적인 내용에는 조례 제정 전과 동일함으로 국민의 권리·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의 징수·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관허사업의 제한 (안 제3조)

나.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세징수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4) 인권영향평가 : 시정 요청 의견제출 하였으나 제안부서 검토의견(원안 유지) 수용

○ (인권영향평가 의견)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납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」에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액의 최저금액 규정 필요

○ (제안부서 검토의견)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(1천만원 이상)을 적용 할 경우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4.27. ~ 5.17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령과의 관계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(이하 “구세”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관허사업의 제한)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제4조(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”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